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자연재해대책법」등 관련 법령 개정 및 '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'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"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"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,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7조)

다. 성주군 지역방재단의 임무,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~제9조)

라. 성주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마.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, 교육 및 훈련, 자문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11조~제13조)

바.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
(안 제14조~제19조)

사.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, 제6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 [미래전략담당관-384(2021.2.8.)]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없음 [가족지원과-4379(2021.1.27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[예고기간 2021.11.25. ~ 2021.12.15.]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「자연재해대책법」등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

영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와 구성, 운영,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